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2024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 발간사 |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은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2017년 8월 출범하여 2025년 현재 4기로 위촉 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옴부즈만은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라는 구호아래 시민의 권리보호와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행정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시민의 어려움을 헤아려 위로하고 민원인과 관련부서와의 충분한 대화와 의견청취,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는 현장방문을 적극 추진하면서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에도 시민옴부즈만으로서 시민의 고충을 경청하고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절차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갈등 해소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민옴부즈만의 귀를 활짝 열어 놓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시민옴부즈만에서 수행한 활동내역과 성과를 담은 운영 상황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시민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여수시와 여수시 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여수시 신년화두는 동심동덕(同心同德)으로 **같은 마음으로 덕을 함께 나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에 저희 시민옴부즈만도 시민의 행복과 풍요의 지속을 위해 옴부즈만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1.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임채성·윤혜옥)

목 차

CONTENTS

I. 시민옴부즈만 운영개요

-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09
- 2.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11
- 3. 시민옴부즈만 기능 및 권한 13
- 4. 고충민원 처리절차 15

II. 시민옴부즈만 운영성과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19
- 2. 시민옴부즈만 활동 31
- 3. 시민옴부즈만 홍보 37

III. 주요 처리사례

- 1. 의견표명 43
- 2. 각하 72
- 3. 기각 79
- 4. 종결 86

IV. 부록

- 1.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99
- 2.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105

I . 시민옴부즈만 운영개요

-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 2.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 3. 시민옴부즈만 기능 및 권한**
- 4. 고충민원 처리절차**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 옴부즈만(Ombudsman)이란? |

- 이 단어의 기원은 고대 스웨덴어에서 유래한 말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대리인·대표자변호인·후견인’이라는 뜻으로,
- 현재는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을 의미

가 도입배경

- 옴부즈만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후, 핀란드·프랑스·영국·호주 등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고충을 공무원이 아닌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게 조사·처리하기 위해 1994년 4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립하였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08년 2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민원의 자율적·자주적 해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매년 실시하는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를 통해 옴부즈만의 제도화 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여수시에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에 이바지하고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2016년 12월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 2017년 8월부터 2명의 옴부즈만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운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6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다 추진경과

- 2016. 10. 05.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운영 기본계획 수립
- 2016. 12. 30.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 2017. 04. 07.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 2017. 08. 01. 제1기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출범
- 2018. 02. 13. 2017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 2019. 02. 12. 2018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 2019. 08. 01. 제2기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출범
- 2020. 02. 25. 2019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 2021. 02. 26. 2020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 2021. 08. 10.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 2021. 08. 10.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 2021. 09. 15. 제3기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출범
- 2022. 02. 15. 2021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 2023. 02. 15. 2022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 2024. 06. 17. 제4기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출범

2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가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 구성·신분 : 2명 / 위촉직(민간인)
-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근무형태 : 주 4일 활동
- 운영방식 : 옴부즈만 독립적 직무수행
- 주요임무
 - 행정기관 등의 행위로 고충민원을 제출한 사항에 대한 조사·처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조정·중재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사실 발견 시 해당기관 감사 의뢰
 -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 실태 확인·점검 등

나 시민옴부즈만 관할

- 여수시 및 그 소속기관 등
- 여수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출자기관, 출연기관
- 여수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민원처리 예외 대상(시행규칙 제7조)

- 행정심판, 행정소송, 감사원의 심사청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른 화해·일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조례 제7조에서 정한 관할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소개

제4기 2024.6.17. ~ 2026.6.16.	 	임채성 대표 시민옴부즈만 ■ 前) 2기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 前) 여수시 경제해양수산물국장 윤혜옥 시민옴부즈만 ■ 前) 여수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제3기 2021.9.15. ~ 2023.9.14.	 	김기채 대표 시민옴부즈만 ■ 前) 여수시 건설교통국장 김양곤 시민옴부즈만 ■ 前) 여수시 문화관광해설사(역사문화)
제2기 2019.8.1. ~ 2021.7.31.	 	임채성 대표 시민옴부즈만 ■ 前) 여수시 경제해양수산물국장 장애신 시민옴부즈만 ■ 前) 교육지원청 교육장(여수, 곡성)
제1기 2017.8.1. ~ 2019.7.31.	 	최봉준 대표 시민옴부즈만 ■ 前) 여수시 국장(기획관광, 경영기획) 곽종철 시민옴부즈만 ■ 前) 여수농협 지점장

시민옴부즈만의 자격(부패방지권익위법 제33조)

- 대학 또는 공인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경력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자
-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 자격 5년 이상 경력자
- 사회적 신망과 행정 식견 및 경험자로서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3 시민옴부즈만 기능 및 권한

가 주요기능

□ 행정통제 기능

- 옴부즈만은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이를 조사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기관에 적절한 시정 조치를 권고함으로써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

□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기능

- 현대사회가 복잡·다양화 되면서 시민과 공공행정기관 간, 이해관계 집단 간 갈등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송 등 전통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는 한계
- 옴부즈만은 행정과 시민의 중간적 입장에서 조정 역할을 함으로써 사법구제 제도의 한계로 인해 양자 간 해결할 수 없는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기체로서의 역할을 수행
- 또한, 비용의 부담 없이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조사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로서의 기능 수행

□ 행정개혁 기능

- 행정의 속성상 한번 결정되면 그 결정 내용을 선례로 삼아 이를 계속 지속하려는 관성을 깨뜨려 위법·부당한 행정관행을 개선하도록 자극
- 특별한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옴부즈만 특성인 ‘부드러운 법률(soft law)’의 적용을 통해 행정의 변화 도모

□ 민주적·정치적 대변(代辯) 기능

- 계층·부문·지역·집단 간 이해가 상충될 경우 소수집단, 소외 및 취약계층의 권익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옴부즈만은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

나 시민옴부즈만 직무 및 권한

- 시민의 권익 보호·구제와 관련된 사항과 민원(고충민원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에 대한 조사처리
- 여수시장 및 여수시의회가 옴부즈만에게 위임·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 주민들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수행
-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외 기구·기관들과의 교류협력
- 기타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시장 및 시의회에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 옴부즈만 조치(결정) 유형 |

- **시정권고** :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 **의견표명** :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도개선 권고의견표명** :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정** :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합의** :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
- **심의안내** : 다른 절차 및 제도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 **기각** :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각하 또는 이첩** : 각하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이첩하는 경우

4 고충민원 처리절차

고충민원 신청

- 방문, 전화 등 접수
- 민원 상담 및 분류(처리기한 60일 이내)



운영회의

- 조사여부 결정(각하 등 해당 여부 판단)
- 담당 옴부즈만 지정



조사개시 통보

- 민원인 조사개시 통보
- 해당부서 고충민원 통보 및 자료 요구



조사 실시

- 민원 자료 검토 및 현장 조사
- 해당부서 및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조사결과 보고

-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심의·의결

- 결과보고에 따른 심의·의결 또는 운영회의 심의·의결



조사결과 통지

- 해당부서 조사결과 및 권고사항 통보
- 민원인에게 조사결과 통지(3일 이내)



결과 회신

- 옴부즈만 권고사항 조치계획 및 이행결과 회신(30일 이내)

II. 시민옴부즈만 운영성과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 2. 시민옴부즈만 활동**
- 3. 시민옴부즈만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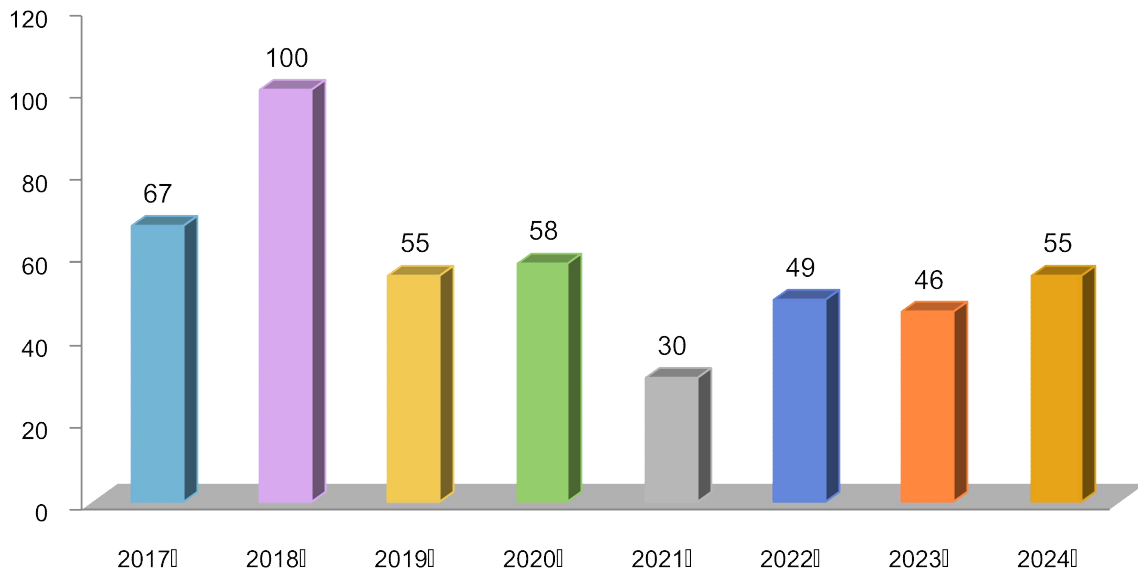
1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가 총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은 2017년 8월 1일 출범 이후 2024년 12월 31일에 이르기까지 총 460건의 민원을 조사·처리함.

[2017년~2024년 시민옴부즈만 연도별 처리결과 현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460	67	100	55	58	30	49	46	55



이 중 옴부즈만 직접조사 민원은 144건으로 시정권고 27건, 의견표명 40건, 합의 3건, 심의안내 6건, 기각 51건, 각하 16건이며, 종결처리 민원은 316건으로 이첩 67건, 취하 11건, 상담완료 238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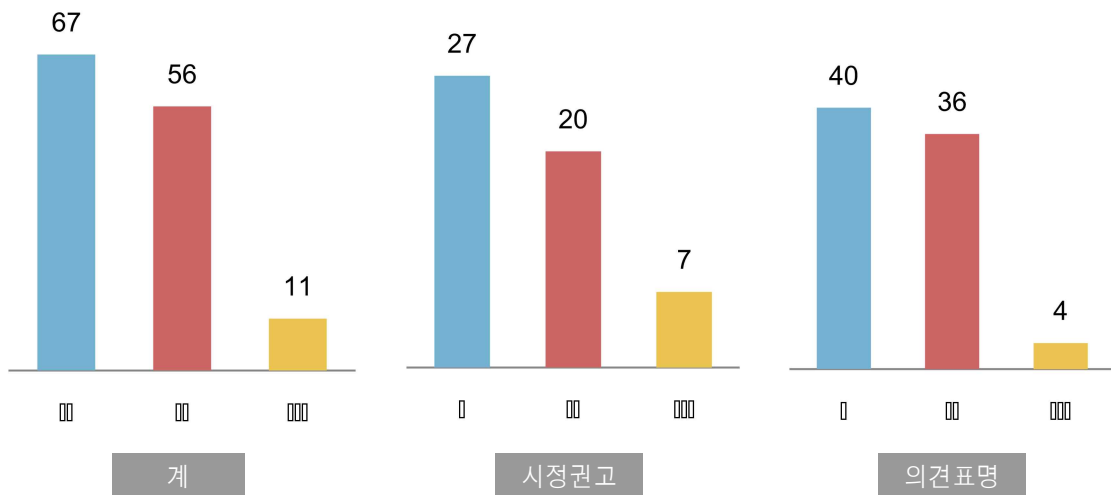
[2017년~2024년 시민옴부즈만 민원 처리결과 현황]

계	직접 조사(144건)							종결처리(316건)		
	시정권고	의견표명	합의	심의안내	기각	각하	추진중	이첩	취하	상담완료
460	27	40	3	6	51	16	1	67	11	238

시민옴부즈만에서 시정권고 및 의견 표명한 민원은 총 67건으로, 이 중 피신청인이 수용한 민원은 57건임.

[2017년~2024년 시민옴부즈만 처리결과 수용 현황]

결정사항	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계	67	27	40
수용	56	20	36
불수용	11	7	4



옴부즈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총 수용률은 85%로, 시정권고 민원은 27건 중 20건이 수용되어 74%의 수용률을, 의견표명 민원은 40건 중 전체 36건 수용되어 90%의 수용률을 기록함.

나 2024년 민원처리 내역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은 2024년 한 해 동안 직접조사 민원 18건과 종결처리 민원 37건을 합하여 총 55건의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함.

[2024년 시민옴부즈만 민원 처리결과 현황]

계	직접조사(18건)						종결처리(37건)		
	시정권고	의견표명	심의안내	기각	각하	추진중	이첩	취하	상담완료
55	-	10	-	3	4	1	10	-	27

□ 시민옴부즈만 직접조사 처리 내역

연번	신청인	민원내용 / 처리결과	완료여부
1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배수로 이설 문제 및 행정 착오로 인한 준공 허가 취소 요청 - **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문 3.다항에 의거 여수시로부터 공사 허가를 받은 설계도면에 따르면 배수로나 국가소유인 토지 지하를 지나가므로 여수시와 협의 후 시공한 것으로 이○○ 소유 토지를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동일 사안으로 **지방법원 **지원에서 (민사)소송 진행으로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각하 결정함 	완료 (각하)
2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도로용도 폐지신청 반력에 대한 진정 - ○○동 **-8은 일부가 도시계획선 내에 있는 도로로 옹벽이 시설된 도로법면으로 사용되고 일부는 맹지 상태로 민원인이 사용 허가 없이 정원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 - 대상 토지 일부가 도시계획선 내에 저촉되고, 현재 도로법면으로 이용되고 있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향후 도로 및 도로법면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용도폐지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인정되어 기각함 - 다만 민원인이 수년 전부터 대상 토지를 허가 없이 사용해 왔으나 맹지 상태의 토지로 사실상 점유하고 있고, 이외의 자가 	완료 (의견표명)

연번	신청인	민원내용 / 처리결과	완료여부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민원인이 대상 토지를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안내할 것을 의견 제시함	
3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해수담수화시설 이전 요청 - 2003년 시설된 해수담수화시설이 마을주민들의 식수원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에 크게 기여하였음에도, 위법건축물 시설이라는 위법성, 해수담수화시설의 사유지 시설에 따른 재산권 침해, 이로 인한 식수원 부지확보의 불안정성 등의 해소를 위해 - 여수시는 토지소유자(○○ ○○리 **-5)에게 적절한 사용 대가를 지불하고 토지를 계속 이용하거나 해당 시설부지를 매입하여 시설을 양성화 또는 별도의 부지확보를 통하여 이설하는 등 위법사항을 해소시키고, - 이와 함께 현재 운영·관리중인 16개소의 해수담수화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위법건축물이 있다면 이를 양성화 시키거나 안정적인 부지확보 등을 통하여 예상되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도서주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으로 식수가 공급되도록 해 줄 것을 의견 제시함 	완료 (의견표명)
4	서○○ 외 4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피해 보상 - 전남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 결과 `23. 7. 8 기각됨 - 환경분쟁조정법은 환경분쟁의 알선·조정·재정 및 중재의 절차 등을 통하여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법으로써 같은법 제42조제3항은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 처리함 	완료 (각하)
5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도로개설에 따른 인근 주택 피해 보상 - 신청인 소유 건물은 1977년 사용 승인되어 47년이 경과 된 단독주택으로 시멘트 블록구조 건물임. - 방에 물이 스며드는 누수 관련 민원의 경우 ***건설(주)에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주택 내·외벽 보수 및 페인트 도장(벽지, 장판 교체 포함), 담장 쌓기 및 맹암거 설치(2회), 뒷집 나대지 콘크리트 포설 등 총 4회에 걸쳐 민원 해소를 위한 작업을 시행한 사실이 있고, - 여수시에서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우수관 내부 CCTV 촬영조사와 우수관로 교체 등 2회에 걸쳐 민원 해소를 	완료 (기각)

연번	신청인	민원내용 / 처리결과	완료여부
		<p>위한 작업을 시행한 사실이 있음</p> <p>- 이에 여수시와 도로공사 시공사에서 총 6회에 걸쳐 민원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작업을 실시 하였으나 신청인 주택 내부에 물이 스며들어 곰팡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지 못하였고, 민원발생 원인이 `○○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때문이라는 점 또한 명확하지 않으므로 민원인의 신청을 각하함</p>	
6	이○○	<p>■ 국유재산 매각 대금 일부 상환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치 재요청</p> <p>- 민원토지(○○리 **60-6)는 1949.2.10. ○○리 **60에서 분할된 적산토지로서 1979.3.24. 국(재무부)으로 소유권이 이전됨</p> <p>- `79.12.23. 당시 여천군은 이**과 ○○면 ○○리 **60-6(답 361평)에 대해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81.11.13. 이**은 여천군으로부터 `81.11.23. 11시까지 ○○면사무소에 출석하여 보증금납부 및 인감증명 등을 제출하거나 매수계약포기서 양식이 첨부된 공문을 받은 사실이있음</p> <p>- ○○리 **60-6은 1999.6.26. 경지정리 완료 후 분할(○○리 2102-8/1,531.1㎡)되어 2012.10.18. 박**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현재 답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은 ○○리 **60-6에 대해 상환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상환하였다고 인정할 어떠한 자료도 남아있지 아니함</p> <p>- 따라서 신청인이 요청한 국유재산 매각 대금 일부 납부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치 재요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함</p>	완료 (기각)
7	장○○	<p>■ ○○동 산77번지(○○산 체육시설부지) 여수시에 매입 요구</p> <p>- 여수시에서 설치한 ○○산 동네 체육시설이 신청인 소유의 ○○동 산 **번지 토지에 토지소유주 승낙 없이 설치하여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므로 신청인 소유의 전체토지 7,339㎡를 매수하고 그동안 토지 사용료 지급과 동네 체육 시설 철거를 요청한 민원으로,</p> <p>- 피신청인은 ○○동 산 **번지 일원을 지적측량(경계측량) 실시하여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고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산 동네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약 100㎡ 내지 전체 토지를 매수하거나, 토지 사용료(기 사용기간 포함)를 지급, 또는 인근지역으로 이설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 내에 동네 체육시설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 표명함</p>	완료 (의견표명)

연번	신청인	민원내용 / 처리결과	완료여부
8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 옛 길 찾기 - 과거에 존재하였던 길을 찾아 회복해 줄 것을 요청한 민원으로 1915년 작성된 지적도면과 2024년 발급한 지적도면을 비교하고, - 토지대장과 현장을 확인한 결과 ○○리 **41, **43, **44번지는 모두 구거로서 도로(농로)로 포장되어 있고 현재까지 지적도면 및 토지대장상 구거로 존재하고 있음 - 또한 ○○리 **93번지는 1990.12.3. 양어장으로 지목 변경됨과 동시에 **91-3, **93-1, **94, **95, **95-1과 합병(4,414㎡)되었고, 폐쇄된 지적도면을 확인한 결과 이들 토지 사이에는 도로나 구거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 현재 김** 외 2인이 공유하고 있는 상태로 양어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신청인이 요청한 '길을 찾읍시다' 관련 민원은 도면과 지목 그리고 토지이용 상황이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기각 처리함 	완료 (기각)
9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요청 - ○○마을회관의 경우 1979년 건축된 마을 공동창고시설을 개조하여 마을회관으로 사용해 왔으나 누수 등으로 사용 불가능한 실정임 - 현재 ○○마을은 차량 진입이 가능한 평지(○○리 **37-1/835㎡ /○○부락새마을회)를 확보하여 빠른시일내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이 완비되어 있음 - 노인복지법 제2조의 기본이념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특히 이를 실현하기 위한 책임의 중심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여수시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마을회관 또한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자치활동의 토대가 되는 마을회관신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부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으므로 여수시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겸용으로 조기에 신축될 수 있도록 조치 취할 것을 의견 표명함 	완료 (의견표명)
10	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독거노인 에어컨 지원 요청 - 노인 통합돌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 자원의 효율적 전달과 연계 등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이 시장에게 있고, 노인복지법 제2조의 노인은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기본이념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인 여수시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여수시는 노인 통합돌봄정책과 희망복지 지원사업 실행 등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시한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적극 	완료 (의견표명)

연번	신청인	민원내용 / 처리결과	완료여부
		<p>적인 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해 복지혜택 확산시켜 줄 것을 의견 표명함</p>	
11	김○○	<p>■ ○○동 택지개발 대토와 상가 분양에 대한 재고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은 조부 소유 해당 주거지에 `82. 2.~`84. 2. 기간을 제외한 사업인정고시일(`10.6.4.)부터 수용재결일(`22.5.4.)까지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18.9.7.부터 해당 주거지에 전입함. - 대법원 판례는 공공사업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해 가급적 이주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주대책 제도 취지이고, 시혜적으로 시행되는 이주대책 수립 등의 경우에 그 대상자의 범위나 내용 등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 장기 미집행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묶어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 행위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점, 어릴 적 추억이 묻어 있는 공간이 사라지는 상실감에 대한 정신적 보상이라는 점에 비추어 여수시는 토지보상법 등의 취지에 걸맞게 최대한의 재량을 발휘해 줄 것을 의견 표명함 	완료 (의견표명)
12	정○○	<p>■ ○○○○ 관제요원 유사 경력 인정 요청</p>	진행중
13	강○○	<p>■ ○○○아파트 신축에 따른 △△아파트 주민 피해 보상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는 국제☆☆☆(주)이고, 시공사는 국제○○○(주)로 `21.11.29.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1, 2단지)을 받아 `22.3.4. 착공하였으며, - `23.7.10. △△△파트 입주자 대표와 시행사 및 시공사는 △△△아파트 단지내 101동(크랙보수/전면)~104동 사이 주차장 아스콘 포장과 인도 설치 등에 대하여 3자가 합의하였고, - ○○○아파트 신축공사가 약 90% 공정율을 보이고있는 상황에서 △△△파트 주차장 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물론 설치된 인도에는 우수관이 인도로 돌출되어 어린이를 비롯한 노약자들의 사고위험이 충분히 예상됨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여수시는 최소한 사용검사 전까지 `23.7.10. △△△파트 입주자대표 등 3자가 서명한 합의 내용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임해 줄 것을 의견 표명함 	완료 (의견표명)

연번	신청인	민원내용 / 처리결과	완료여부
14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 ○○마을 주차장 구획 재정비 요청 - ○○리 **13-5번지 소재 마을 주차장은 여수시 소유의 토지로 2005년경 ○○산 등산객 주차장 목적으로 설치하여 등산객과 마을주민들이 주차장 및 마을안길 연결 통로로 활용하고 있으나 주차선이 지워져 차량을 무분별하게 주차함으로써 마을 안길 진입로 입구를 막는 등 주민 불편 발생 - 여수시(건설과)에서는 차량이 안전하게通行하고 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차선을 유도하는 차선 유도봉과 주차를 금지하는 주차금지봉을 현장에 맞게 적절하게 설치하고 - 해당 토지 지목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원활한 차량通行과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 표명함 	완료 (의견표명)
15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완화 요청 -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취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사용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기 위함임 - 「여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6조는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 및 상점가의 경우에는 같은 상권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고 하고 있고 - 같은 조례 제7조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고 하고 있음 - 신청인의 상점은 진남시장과 10m 거리에 불과하여 시장의 일부라 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운영하는 상점과 해당 구역 상인(상인회)의 협조하에 가맹점 등록 및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완료 (의견표명)
16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학습비 균등 지원요청 - 방과 후 학교 운영은 교육부 소관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2항 2호에 의거,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수익자가 경비를 부담하며, - 농어촌학교는 도시지역에 비해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완료 (각하)

연번	신청인	민원내용 / 처리결과	완료여부
		<p>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와 동법 제23조의 농어촌학교 학습의 학습권 보장,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등의 근거에 따라 지원하고 있음.</p> <p>- 아울러 방과 후 학교 학습비 균등 지원요청 민원은 교육부(여수시 교육청) 소관이므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 제7조(관할)에 의거 각하함</p>	
17	박○○	<p>■ 사유지 내 하수관로 철거요청</p> <p>- ○○동 **5-1은 실제 존재하는 구거로 하수관로(구거)가 사유지를 지나가는 경우가 아니라 ○○동 **5와 **1 사이를 가로지르는 구거로 확인되었으며</p> <p>- ○○동 **1은 주택부지, ○○동 **2, **3은 나대지, **5는 묵답으로 확인되었음.</p> <p>- 따라서 '사유지 내 하수관로 철거' 를 요청하는 민원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p>	완료 (기각)
18	박○○	<p>■ 기후보호환경해설사 복귀 요청</p> <p>- 여수시는 기후보호해설사 근태관리를 위해 몇 가지 제척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중 '3개월 연속으로 체험관 해설 활동이 없는 경우' 로 결원이 생겼을 때 별도의 모집 과정을 통해 해설사를 충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p> <p>- 신청인의 경우 `22.8.~`23.7.(1년간) 기간 동안 해설사 활동을 하지 않았고, 해설사 활동을 희망하는 타 시민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 해설사 복귀를 위한 별도 모집 통해 선발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p> <p>- 여수시는 기후보호해설사 모집 및 충원 관련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공개 모집을 통한 기후해설사 모집·충원으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줄 것을 의견 표명함</p>	완료 (의견표명)

□ 이첩·취하 민원 내역

연번	민원제목	처리사항	비고
1	○○아파트 주 출입구 교통안전 문제 해결 요청	이첩 (여수시)	

연번	민원제목	처리사항	비고
2	주택법 위반에 따른(감경)부과 사전통지의 건	이첩 (여수시)	
3	○○동 △△△ 인근 문화재 보존지구 적정가 매입 요구	이첩 (여수시)	
4	○○동 ○○병원 ~ ○○식자재 구간 타원형 교차로 신설 요청	이첩 (여수시)	
5	○○동 동사무소 뒤편(○○동 280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 요청	이첩 (여수시)	
6	○○동 소재 빈집철거요청	이첩 (여수시)	
7	○○시장 주차장 건립 요청	이첩 (여수시)	
-	당산에 있는 보호수(팽나무) 뿌리 당산 제각 마당 침범	이첩 (여수시)	
8	○○승마장 입구 마을 안길 도로포장 요청	이첩 (여수시)	
9	○○동 ○○동 경계 사이 공영주차장 설치 요청	이첩 (여수시)	
10	도시계획도로 복원의 건	이첩 (여수시)	

□ 상담완료 민원 내역

연번	민원내용	처리사항
1	토지사용승낙 없이 설치한 개인 불법 배수로 철거 요청	판결문 등을 지참하여 옴부즈만실 방문 요청
2	공무원의 일 처리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 제기	민원 접수 방법 안내
3	웅천천수공원 바닷가에 맨발 걷기 인원 증가. 이에 세족장 설치 건의	해양정책과 확인 후 안내하고 상담 해소

연번	민원내용	처리사항
4	고락산 음수대 고장	상수도과 전달하여 빠른 조치 하겠다는 답변 받음
5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근 주택에 대한 피해가 커 도움 요청	관련 서류 지참하여 시민옴부즈만실 방문 요청
6	웅천해변문화공원 바닥 파손 및 산책로 제초 요청	공원과 확인 후 안내하고 상담 해소
7	상가 앞 출입구를 막는 차량으로 영업방해 받음. 주차금지 라바콘은 도로시설관리과에서 수시로 치우니 해결 방법문의	도로시설관리과 확인 후 주차차량과와 연계하여 방법 도출할 것 안내
8	가압류된 건물철거 및 멸실등기에 대한 문의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후 민원인에게 안내하여 상담 해소
9	오림동 윗길 아랫길 나뉘는 곳 신호등 불량	교통과 담당자에게 빠른 조치 요청
10	진달래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기 위한 제안	제안 담당 부서(기획예산과) 확인 후 안내
11	항만 시설 재계약 거부에 대한 방법문의	해양정책과 확인 후 안내
12	충무동 보안등 고장 신고	해당 동 담당자에게 빠른 조치 요청
13	봉산동 소재 사유지 대부 긴급 진행 요청	회계과와 도로과로 이미 접수된 것으로 해당 과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
14	2024년 세계 창의 경진대회가 전남대 여수 캠퍼스에서 개최되니 여수시민이 되면 가질 수 있는 혜택 홍보하여 줄 것 요청	청년인구정책관 확인 후 안내
15	지하도 상시 침수로 주민 이동 불편 해소 요청	면장님과 면담 후 면장 포괄사업비로 추진하겠다는 답변 받음
16	마을주민의 식수로 사용되는 관정 바로 옆 공장이 신축됨. 주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관계로 권익위에 민원 접수 하고 싶음	권익위 민원 접수 방법 안내
17	돌산읍 소재 사유지 침범에 따른 중재 문의	정확한 측량 후 개인 사유지 표시할 것 안내
18	채무 상환 독촉장이 주기적으로 전달됨에 따른 해결 방법문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권유

연번	민원내용	처리사항
19	주민센터 프로그램 증설신청	담당자에게 내용 전달 후 상담 해소
20	주민센터 주차장 공사로 불편을 겪고 있으니 안전조치 및 조속한 공사 완료 요청	안전지킴이 배치하여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공사 기간 내에 신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 받고 상담 해소
21	1950년대 건물로 멸실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 건으로 방문하여 상담하여 줄 것 요청
22	여수공단 내 슬러지 자원화시설 습식 세정탑 처리 개선 사업을 ○○산업으로부터 재하청받아 공사 완료했으나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관할인 여수시청에서 조치 취해 줄 것	이 건은 여수시 관할이 아닌 한국환경공단 관할임. 해당 문제로 한국환경공단 관계자와 연락을 취한 후 민원인과 현장감독이 사안 해결해 볼 수 있도록 안내

□ 종결처리 민원 내역

연번	민원내용	처리사항
1	증여 사실 없는 토지 반환 요청	대상 토지에 대한 입증할 근거 없음
2	울촌 장도 파크골프장 운영시간 조정 요청	의견 수용하여 운영시간 조정
3	휴경지 사유지 경작 허가 요청	공유재산 대부 방법 안내
4	소호마을 당산 제각 보수 요청	문화유산 미등재로 수리 대상 아님
5	드론 지원 사업 자격조건 변경 요청	의견 수용으로 자격조건 변경

2 시민옴부즈만 활동

가 2024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운영

- 운영시기 : 2024. 10. 10. ~ 11. 12.
- 운영방법 : 읍·면·동 방문 상담
- 상담관 : 2명(시민옴부즈만)
- 주요내용 : 고충민원 상담 및 접수, 고충민원 사후관리 현장 방문 등
- 운영일정

구분	읍·면·동 상담일
10월	10일(중앙동, 한려동, 동문동) / 22일(화양면) / 23일(쌍봉동) / 28일(월호동, 국동, 대교동) / 30일(소라면)
11월	4일(울촌면) / 6일(돌산읍) / 7일(여서동, 문수동) / 8일(시전동) / 11일(여천동) / 12일(화정면)

□ 운영결과

총 접수건수	고충민원	현장해결	이첩	취하
25건	15건	6건	3건	1건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읍면동 방문 상담



홍보용 현수막

10월 10일(중앙동)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읍면동 방문 상담



10월 22일(화양면)



10월 23일(쌍봉동)



10월 28일(월호동)



10월 30일(소라면)



11월 4일(을촌면)



11월 6일(돌산읍)



11월 7일(여서동)



11월 8일(시전동)



11월 11일(여천동)



11월 12일(화정면)

나 시민옴부즈만 활동사항

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 현장 조사



신월동



봉계동



남면



소라면



광무동



을촌면



시전동



중화동

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 현장 조사



중앙동



국동



소라면



쌍봉동



을촌면



돌산읍



안산동



을촌면

고충민원 관계자 회의



건설과, 도로과, 도시시설관리과



문화유산과



허가과



도시시설관리과



상수도과



공영개발과



체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 건설과



수도행정과



시장님 옴부즈만실 방문

제2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역량강화교육 참석(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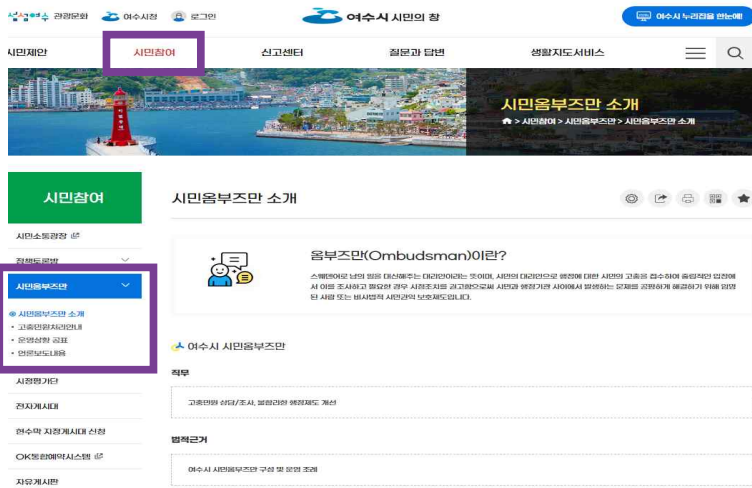


호남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협의회 참석(1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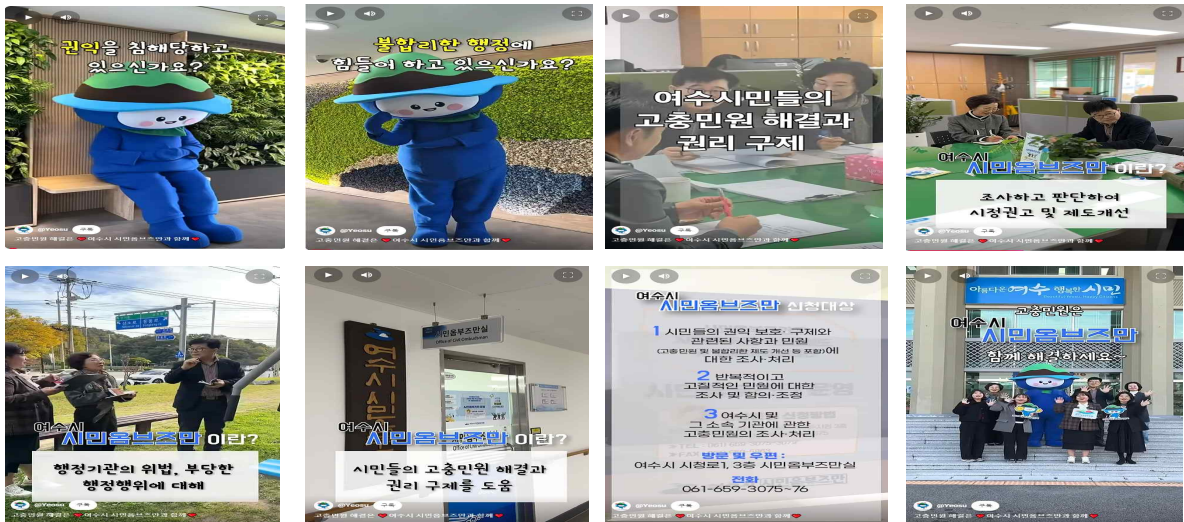


3 시민옴부즈만 홍보

가 여수시 누리집 및 리플릿 홍보



나 유튜브 동영상 제작·홍보



다 언론보도



2024-06-18 14:21

여수시, 제4기 시민옴부즈만 위촉

[권연심]

행정경험, 전문성 갖춘 임채성 윤혜옥 위원...시민의 고충해결 권익보호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17일 시장실에서 임채성(남), 윤혜옥(여) 위원을 제4기 시민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 사진 왼쪽부터 여수시 시민 옴부즈만 임채성(남), 윤혜옥(여) 위원

‘옴부즈만’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피해를 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수시는 지난 2017년 시민 옴부즈만을 출범,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 2명의 위원을 시민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 있다.

제4기 시민옴부즈만 ‘임채성 위원’은 여수시 경제해양국장으로 퇴직하고 제2기 시민옴부즈만으로도 활동하는 등 풍부한 행정경험과 전문성을, ‘윤혜옥 위원’ 또한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다양한 민원 해결능력을 갖췄다.

이들은 오는 2026년 5월까지 2년간 시의 위법 부당 소극적인 처분 등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행정기관과 시민 사이에 발생한 갈등 조정, 행정제도 개선 필요사항 개선 권고 등을 수행한다.

이날 정기명 여수시장은 “시민옴부즈만은 시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 해소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 확보도 큰 역할을 한다”며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희망을 열어가는 여수인터넷뉴스

기사제보/취재요청 061) 691-7500

파이낸셜뉴스

사회 > 전국

'시민 고충민원 해결'...여수시, '찾아가는 시민 옴부즈만' 운영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7 14:30 수정 2024.10.07 14:30

기사 보기

10일~11월 12일...민원 상담 및 사후관리 현장 방문



전남 여수시가 시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읍·면·동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시민 옴부즈만'을 운영한다. 여수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 전남 여수시는 시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읍·면·동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시민 옴부즈만'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여수시는 오는 10일 △중앙동을 시작으로 △화양면(22일) △쌍봉동(23일) △월호동·국동·대교동(28일) △소라면(30일) △율촌면(11월 5일) △돌산읍(11월 6일) △여서동·문수동(11월 7일) △시전동(11월 8일) △여천동(11월 11일) △화정면(11월 12일) 등을 방문해 민원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예약하면 되며, 여수시는 개별 상담을 통해 단순 민원 사항 등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60일 이내 처리 결과를 알릴 방침이다. 한편 옴부즈만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피해를 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수시는 앞서 지난 6월 17일 제4기 시민 옴부즈만으로 임채성·윤혜옥 위원을 위촉한 바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기 위해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게 됐다"면서 "각종 불편 사항을 적극 상담하고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남도일보

여수시,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고충처리 나서

읍면동 현장에 직접 찾아가 고충민원 해결에 앞장



전남 여수시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한 달간 16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했다./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가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을 통해 위법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피해를 본 시민을 만나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시민들의 고충 해소에 나섰다.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으로 위촉된 2명의 위원은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한 달간 16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단순 민원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고, 심층 조사가 필요한 고충 민원 25건을 접수했다.

접수된 고충민원은 유관 부서에 전달돼 현장 확인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후, 내달 말까지 처리 결과를 안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시와 시민의 중간에서 시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읍면동을 찾아가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각종 불편 사항을 적극 상담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18년부터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해 현재까지 107건의 고충민원을 접수처리했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III. 주요 처리사례

1. 의견표명
2. 각하
3. 기각
4. 종결

01 의견표명

도로용도폐지 신청 반려에 대한 진정

1 민원개요

- 여수시 ○○동 *14-36, *14-50(대지)은 이** 소유로서 여수시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음
- 용벽이 설치되어 점유(이**)하고 있는 나대지(○○동 94-8/도로/73㎡/여수시)에 대한 용도폐지 불가 답변에 대하여 재심의요청

2 사실관계

-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 '24. 3. 26.
- 용도폐지 민원 반려처리 부당 민원제기 '24. 6. 12.
- 용도폐지 검토결과안내(○○동 *4-8)-불가 '24. 7. 1.
 - 신청토지 일주 도시계획선 내에 저축 및 도로법면
 - 향후 도로 및 법면 유지관리에 지장 초래 우려
- 도로 용도폐지 신청 반려에 대한 진정 민원(음부즈만실) '24. 7. 8.
- 진정 민원 현장 확인(음부즈만실) '24. 7. 8.

3 판 단

가.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9조제1항, 제2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2조 등

나. 판단 내용

- 여수시 ○○동 *4-8은 일부가 도시계획선 내에 있는 도로로서 옹벽이 시설된 도로법면으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는 맹지 상태로 민원인이 사용허가 없이 정원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
- 대상토지는 행정재산(공공용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으로서 영구 시설물의 축조가 금지(같은 법 제13조)되어 있으며,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사권의 설정을 제한하고 있으나(같은 법 제19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같은 법 제20조)하고 있음

4 결론

- 따라서 대상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선 내에 저축되고, 현재 도로법면으로 이용되고 있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향후 도로 및 도로법면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용도폐지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인정되어 민원인의 신청을 기각함
- 다만 민원인이 수년 전부터 대상 토지를 허가 없이 사용해 왔으나 맹지상태의 토지로서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점, 민원인 이외의 자가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호스텔업을 운영하면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여수시 관광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민원인이 대상토지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도록 안내할 것을 의견 제시함

5 처리결과 → 수용

◆ 소관부서 : 도로시설관리과

- 대상 토지를 허가 없이 사용해왔으나 1)맹지상태의 토지로서 사실상 점유하는 있는점, 2)민원인 이외의 자가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3)호스텔업을 운영하면서 2026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와 여수시 관광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사용허가를 득한 뒤 사용할 것

○면 ○○리 대두마을 해수담수화시설 이전요청

1 민원개요

- ○면 ○○리 산*1-5(임야, 김** 소유)중 일부가 부모님의(소유) 명의로 알고 경작해옴
- 법원 조정조서에 따라 분할하고자 하였으나 해수담수화시설이 불법으로 시설되어 측량도 안되고, 분할도 안됨
- 불법시설물(해수담수화시설)에 대하여 합법화 추진을 하려고 하였으나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 추진 불가
- 불법건축물이 해소되어야 본인과 마을에서는 분할측량을 할 수 있으니 해수담수화시설 이설해 줄 것을 요청

2 사실관계

- 고충민원 신청서 접수 '24. 7. 9.
- 고충민원 관련 의견조회 '24. 7. 18.
 - 불법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분할측량 및 개발행위허가 여부
- 고충민원 관련 의견조회 회신(도시계획과) '24. 7. 22.
 - 위법사항 해소 후 개발행위허가 가능
- 고충민원 현장 확인 '24. 7. 26.

3 판 단

가. 관계 법령

- 헌법 제23조항제3항
- 건축법 제49조, 제57조제1항 및 2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5호

- 2022 지적업무사례집(3-68/88쪽)
 -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나. 판단 내용

- 「헌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는 토지 분할은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22 지적업무사례집’에 따르면 「건축법」 제49조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위반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위반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면 ○○리 산*1-5(5,157㎡, 임야) 지상의 일부(231㎡)에 ○○○도 주민 61명의 식수원인 해수담수화시설이 설치되어 사용 중에 있으며, 2003년부터 현재 현재까지 공공의 이익에 크게 기여 해 온 것으로 인정됨
- 이 시설은 당시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여수시에서 건축허가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추진하여 현재 개인 사유지(김** 소유)에 축조된 위법 시설물로 확인되었으며, 토지소유자는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 내지 침해를 받아 왔고, 사유재산권 보호와 안정적인 식수원 부지확보 필요성이 대두됨
- 또한 여수시는 법에 따라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 행정기관으로서 마땅히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수담수화시설을 허가 없이 축조한 사실은 정당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려움
-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여수시의 위법한 행정행위가 합리화될 수 없으며, 해수담수화시설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축조되고, 운영·관리되어야 함

4 결론

- 2003년 시설된 해수담수화시설이 ○○리 주민들의 식수원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에 크게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법건축물 시설이라는 위법성, 해수담수화시설의 사유지 시설에 따른 재산권 침해, 이로 인한 식수원 부지확보의 불안정성 등의 해소를 위해
- 여수시는 토지소유자(○면 ○○리 산*1-5)에게 적절한 사용 대가를 지불하고 토지를 계속 이용하거나 해당 시설부지를 매입하여 시설을 양성화 또는 별도의 부지확보를 통하여 이설 하는 등 위법사항을 해소시키고,
- 이와 함께 현재 운영·관리중인 16개소의 해수담수화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위법건축물이 있다면 이를 양성화 시키거나 안정적인 부지확보 등을 통하여 예상되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도서 주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으로 식수가 공급되도록 해줄 것을 의견 제시함

5 처리결과 →수용

◆ 소관부서 : 상수도과

- 대두마을 해수담수화 시설은 건축물대장 미등재 시설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해당 담수화시설 편입 부지를 매입 또는 동 시설물을 별도 부지 확보 후 이설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처리할 계획임

○○ △△△ 신축에 따른 ○○○파트주민 피해보상요청

1 민원개요

- 준공전 협의사항 중 주차장 하자 보수를 마무리하기로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인도에 우수관 파이프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어 통행 시 불편하고 부딪침 사고 발생 우려 안전 조치 요청

2 사실관계

가.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주) 대표 김**
- 1단지 개요
 - 위치 : ○○면 ○○리 *502-1외 9필지(1단지)/9,603.2㎡
 - 연 면 적 : 28,918 ㎡
 - 층수, 동 : 지하 1층, 지상 16~20층, 6개 동
 - 세대수 : 258세대
- 2단지 개요
 - 위치 : ○○면 ○○리 *501-2외 2필지(2단지)/7,973.8㎡
 - 연 면 적 : 22,855㎡
 - 층수, 동 : 지하 1층, 지상13~20층, 4개 동
 - 세대수 : 138세대
- 진행상황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1, 2단지) '21. 11. 29.
 - 사업착공 '22, 3. 4.
 - 안전점검실시[(주)대한구조안전기술단] '23. 4. 27. ~ 6. 25.

-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접수(1단지 7차, 2단지 6차) '24. 9. 5.
※ 현재 공정율 약 90%

나. 사실관계

- 합의서(○○○파트 입주자대표 ↔ ○○△△△(주)대표, ○○☆☆☆(주)대표) '23. 7. 10.
 - ○○○파트 단지 내 101동(크랙보수/전면)~104동 사이 주차장 아스콘 포장
 - 인도설치 등
- ○○면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상가동 균열 및 누수 피해 조치 요청 민원신청(최**→시민소통담당관실) '24. 5. 20.
- 민원처리결과 안내(허가과→최**) '24. 5. 28.
 - 공사로 인한 피해 발생시 적절한 조치토록 시공사에 요청
- 고충민원 접수(최**→옴부즈만실) '24. 11. 5.
- 고충민원 현장확인 '24. 11. 5.

3 판 단

- ○○ △△△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는 ○○△△△(주)이고, 시공사는 ○○☆☆☆(주)로 '21. 11. 29.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1, 2단지)을 받아 '22. 3. 4. 착공하였으며,
- '23. 7. 10. ○○○파트 입주자 대표와 시행사 및 시공사는 “○○○파트 단지 내 101동 (크랙보수/전면) ~ 104동 사이 주차장 아스콘 포장과 인도 설치 등에 대하여 3자가 합의하였고,
- ○○ △△△ 아파트 신축공사는 현재 약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음
- ○○ △△△ 아파트 신축공사가 약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파트 주차장 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물론 설치된 인도에는 우수관이 인도로 돌출되어 어린이를 비롯한 노약자들의 사고위험이 충분히 예상됨

4 결론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여수시는 최소한 사용검사 전까지 '23. 7. 10. ○○○파트 입주자 대표 등 3자가 서명한 합의 내용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임해주실 것을 의견 표명함.

5 처리결과 → 수용

◆ 소관부서 : 허가과

- 사업 주체와 민원인의 협의에 따라 2024. 12. 4. ~ 12. 10.까지 주차장 보수 작업 시행 예정
- 인도 우수관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슬라브 간섭으로 매립시공은 어려우나 보행자 등 안전 확보를 위해 우수관 안전 식별 반사 스티커 설치 예정
- 사업주최 측에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 요청하였으며, 사용검사 시까지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음

○○산 동네 체육시설에 설치된 토지(사유지) 매수 요청

1 민원개요

- ○○산 입구 △△동 산 ☆☆번지에 토지소유주 승낙 없이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2010년 12월)하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여수시에서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토지를 매수하고 그동안의 토지 사용료 지급 요청

2 사실관계

가. 설치현황 및 토지현황

- ○○산 동네 체육시설 설치 현황
 - 설치기간 : 2011. 12. 23.
 - 설치위치 : ◇◇동 산 ○○-2번지
 - 설치면적 : 약 100㎡
 - 사업시설 : 운동기구(평행봉 등 7종 7점), 편의시설(사각 탁자 등 2종 5점)
- 신청인 소유 토지 현황
 - 지번 : 여수시 △△동 산 ☆☆번지(지목 : 임야)
 - 규모 : 7,339㎡
 - 토지소유자 : 장** 외 2인
 - 소유권 취득일 : 2009. 9. 25.

나. 사실관계

- 1차 민원 '14. 12. 03.
 - : 신청인 소유 여수시 △△동 산 ☆☆번지 지적 경계복원 측량을 한 결과 여수시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이 본인 소유 토지 내 설치 사실을 알게 되어 여수시 관련 부서 방문하여 대책 마련 촉구

- 여수시 관련 부서 실무자(과장 외 2인) 현장 확인
- 2차 민원(△△동 산 ☆☆번지 매수 요청) ‘23. 10. 26.
→ 현장 점검 결과 △△동 산 ☆☆번지 내 동네 체육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 전체를 매수하기는 어려우며 동네 체육시설 이설을 안내했으나 신청인이 보류함
- 3차 민원 ‘24. 06. 05.
토지 무단점용에 대한(사용료) 손해배상 및 토지 전체 매수 요구
→ 토지 사용료 지급 및 전체토지 매수는 어려우며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동네 체육시설 철거 및 이설 조치 가능 안내
- 여수시 고충 민원 접수 ‘24. 09. 27.
-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현장확인 ‘24. 10. 10.
- ○○산 동네 체육시설(△△동 산 ☆☆번지) 지적측량(경계측량) 신청 ‘24. 10. 04.
- 변호사 법률 자문 의뢰 ‘24. 10. 21.
- △△동 산 ☆☆번지 토지가 등록 사항 정정 대상 토지(지적 공부상 면적 오류)로 정정 신청(토지소유자 3인) ‘24. 11. 01.

3 판 단

-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및 2항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 결론

- 여수시에서 설치한 ○○산 동네 체육시설이 신청인 소유의 △△동 산 ☆☆번지 토지에 토지소유주 승낙 없이 설치하여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므로 신청인 소유의 전체토지 7,339㎡를 매수하고 그동안 토지 사용료 지급과 동네 체육시설 철거를 요청한 민원으로,
- 피신청인은 △△동 산 ☆☆번지 일원을 지적측량(경계측량)을 실시하여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고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산 동네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약 100㎡ 내지 전체토지를 매수하거나, 토지 사용료(기 사용기간 포함)를 지급, 또는 인근지역으로 이설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 내에 동네 체육시설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 표명함

5 처리결과 → 수용

◆ 소관부서 : 체육지원과

- 동네 체육시설이 점유한 면적에 대해 부분 매각 의사 밝혔으나 민원인은 전체 매입을 원하여 협의되지 않음
- 동네 체육시설 토지사용료 지급 및 철거요청은 체육시설이 설치될 당시의 현실적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음

○○면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요청

1 민원개요

- 노후 된 경로당을 새로 지어줄 것 요구

2 사실관계

가. 시설개요

- 위 치 : 여수시 ○○면 △△리 **32
- 토 지 : 278㎡/대지
- 건 물
 - 구조/지붕 : 블록구조/슬레이트
 - 연/건축면적 : 128.84㎡
 - 용 도 : 사무실, 마을공동창고
 - 1동 1층 : 사무실(59.54㎡)
 - 2동 1층 : 마을공동창고(69.3㎡)
 - 사용승인 : 1979. 02. 10(45년)
 - 소 유 자 : △△리 ☆☆새마을회
 - 경로당 등록자 수 : 55명
- 이용실태
 - 1층 - 경로당으로 이용, 건물 노후로 천장 누수 심각
 - 2층 - 누수 등으로 이용자 없음

나. 사실관계

- 고충민원 신청서 접수 '24. 10. 22.
- 민원현장 확인 '24. 10. 22.

3 판 단

가. 관계 법령

- 노인복지법 제2조, 제4조, 제4조의2, 제31조, 제36조, 제37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 여수시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나. 판단 내용

- 노인복지법 제2조제1항은 노인은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4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는 노인의 보건 복지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노인복지법 제31조와 제36조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경로당을 포함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는 지역 노인들의 자율적인 여가 활동을 제공하는 장소인 경로당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약 55명의 어르신들이 여가 활동을 즐기는 ○○면 ☆☆마을 경로당은 45년 전인 1979년 건축된 블록구조/슬레이트 지붕의 건물을 1996년부터 사무실을 경로당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 건물 노후로 우천 시 누수가 심각하여 천정과 벽면에 곰팡이 등이 퍼져있고, 평상시에도 누전차단기가 내려가는 등 안전에도 위협을 받고 있으며, 길이 좁아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여 유사시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등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과 안전 확보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실정임
- 또한 마을회관은 마을주민들의 자치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소 용도의 건축물로서 여수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2조, 제3조 제1항, 제4조는 신축의 경우 1개 행정리에 1개소 건립을 원칙으로 하되 경로당이 없는 마을의 마을회관을 신축할 경우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겸용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한 지 25년 이상 된 건축물로 노후, 균열,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건물일 경우 재건축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마을회관의 경우 1979년 건축된 마을 공동창고시설을 개조하여 마을회관으로 사용해 왔으나 누수 등으로 사용 불가능한 실정임

- 현재 ☆☆마을은 차량 진입이 가능한 평지(△△리 1437-1/835㎡/☆☆부락새마을회)를 확보하여 보다 빠른 시일 내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이 완비되어 있음

4 결론

- 노인복지법 제2조의 기본이념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특히 이를 실현하기 위한 책임의 중심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여수시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마을회관 또한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자치활동의 토대가 되는 마을회관신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부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으므로 여수시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겸용으로 조기에 신축될 수 있도록 조치 취할 것을 의견 표명함

5 처리결과 → 수용

◆ 소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건설과

- 25년 이상 경과 된 경로당에 대해 신축사업비 지원하고 있음. 경로당 신축사업 신청 시 국토안전관리원 안전 점검 결과를 통해 우선순위 심사하여 지원 여부 적극 검토하겠음

○○주공 아파트 독거노인 에어컨 지원요청

1 민원개요

- 주공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독거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내년 여름 더위를 극복할 수 있는 에어컨을 지원해 주십시오
- 18통(101동) 5명/ 19통(103동) 3명

2 사실관계

가. 65세 이상 인구 현황

‘24. 9월 말 기준

인구수	65세 이상 인구수	기초생활수급자 + 65세 이상 + 1인 생활자	비 고
268,000명	63,341명	3,761명	

나. 사실관계

- 고충민원 신청서 접수 ‘24. 10. 23.

3 판 단

가. 관계 법령

- 노인복지법 제2조
- 여수시지역사회노인통합돌봄지원조례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 여수시희망복지지원사업운영에관한조례 제1조, 제2조, 제3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나. 판단 내용

- 노인복지법 제2조제1항은 노인은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는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보건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여수시 지역사회노인 통합돌봄 지원조례 제3조는 고령·장애·질병·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을 통합돌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 여수시 희망복지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는 저소득 주민, 노인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은 희망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시장이 직접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는 복지서비스 제공대상자에 대한 생활 불편해소, 물품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결론

- 따라서 노인 통합돌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 자원의 효율적 전달과 연계 등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이 시장에게 있고, 노인복지법 제2조의 노인은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기본이념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인 여수시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여수시는 노인 통합돌봄정책과 희망복지 지원사업 실행 등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시한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적극적인 사각 지대 발굴 등을 통해 복지혜택을 확산시켜 줄 것을 의견 표명함

5 처리결과 → 수용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지역사회 노인통합돌봄지원 및 희망복지지원사업운영조례」 의거,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통합돌봄서비스, 생활불편 해소, 서비스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 에어컨 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시행중이며,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기준에 해당 할 경우 신청 가능함

○○동 택지개발 대토와 상가분양에 대한 재고

1 민원개요

- ○○동 택지 문제
- 시 공탁금 문제(찾는 방법)

2 사실관계

가. 토지건물 현황

- 토 지 : 여수시 ○○동 **7-2(대지/354㎡)
 - 소유권 변동상황

등기원인	이전일	소유자 1	소유자 2	비고
소유권이전	'33. 2. 20.	**두	**용	공유자 지분 1/2
상속	'63. 3. 2.	-	**삼	
협의취득	'20. 9. 25.	-	여수시	
토지수용	'20. 11. 4.	여수시	-	

- 건 물 : 목조 및 브릭조, 기와 및 스테트 지붕(94.19㎡)
 - 소유권 변동상황

등기원인	이전일	소유자 1	비고
소유권보존	'21. 5. 27.	**곤	
소유권이전	'22. 5. 4.	여수시	수용

나. 신청인의 가족관계 및 주소이동 내역

- 가족관계
 - **두(망)
 - **환 : **두의 자(1991. 5. 28. 망)

- **곤 : **환의 자(5남매 중 첫째)
- 주소지 이동내역
 - '81. 2. 27 까지 여천군 **면 **리 **7-2 거주
 - '81. 02. 28 **시 동구 **동 전입
 - '82. 02. 01 여천군 **면 **리 전입
 - '84. 02. 23 **시 서구 **동 전입 후 **동, **동, **동, **동, **동, **동 등을 거쳐
 - '11. 10. 31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전입
 - '18. 09. 07 여수시 ○○동 전입

다. 사실관계

- 금전공탁(여수시→**두) '20. 11. 10.
- **지구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 수립 계획 통보 '21. 10. 18.
 - 선정기준
 - 사업인정고시일 : 2010. 6. 4. (여수시고시 제20**-99호)
 -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서 당해 사업으로 인해 소유 가옥이 철거되는 자
 - 이주대책 수립 대상 : 128세대, 273명
 - ※ 공급기준 : 1세대 1주택(2가옥 소유자 동일)
 - 이주대책 수립 대상 : 128세대, 273명
 - 이주대책 대상 제외자
 - 무허가건축물 소유자(1989. 1. 24 이전 건축물 제외)
 - 사업인정고시일(2010. 6. 4)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22. 5. 4)까지 계속 거주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 **지구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 '21. 10. 27.
 - 이주대책공급대상자 : 90명 중 52명
 - **곤 : 사업인정 고시일('10.6.4)부터 보상협의(수용)일까지 소유자 미거주로 이주대책 및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제외
- 진정서 접수(**마을개발추진위원회→여수시) '21. 11. 25.

- 이주택지공급보상 진정(27명)
- 진정민원 처리결과 안내 ‘21. 12. 20.
 - **지구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 수립 계획에 의함을 안내
- **지구택지개발사업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 확정 ‘22. 3. 2.
 - 대상 : 사업인정고시일(‘10. 6. 4)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 전부(60㎡이상)를 협의에 의하여 양도한 자로서 소유 가옥이 철거되는 자(15명)
 - **곤 비대상 사유 : 재결, 미거주
- 이주택지 공급선정배제에 따른 청원 접수 ‘22. 4. 27.
- ‘22년 제2차 여수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22. 10. 12.
 - **지구 택지개발사업 이주택지 공급 관련 장기 반복 및 다수인 민원해소 대책 의견수렴 및 타당성 여부 심의
- 이주택지 공급대상자 추가선정(결정) 통지 ‘23. 2. 8.
 - 공급범위(90) : 이주택지공급(71)+협의양도인택지(6)+공급제외자(13)
- 고충민원 접수(**곤→옴부즈만실) ‘24. 10. 23.

3 판 단

가. 관계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55조
 - ※ 약칭 토지보상법
-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
- 택지개발업무 처리 지침 제24조, 제25조
- 대법원판례(2014. 9. 4. 선고 2012다109811, 2013. 8. 23. 선고 2012두24900, 2015. 8. 27. 선고 2012두26746 등)

나. 판단 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 토지보상법) 제78조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 대상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고, 주거이전비용 등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은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는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 관례(2009.9.24. 선고 2009두9819)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기준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하고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닌 미거주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이주대책은 의무가 아닌 시혜적인 것으로 판결 한 바 있으며 (2014. 9. 14. 선고 2012다109811)
- 시혜적으로 시행되는 이주대책수립 등의 경우에 그 대상자의 범위나 그들에 대한 이주대책수립 등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한 바 있음(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 두26746)
-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대법원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 가급적 이주대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 제도의 취지라고 볼 수 있다고 판결함(2013. 8. 23. 선고 2012두24900)

4 결론

- 신청인은 조부 **두가 1933년 여수시 ○○동 **7-2(1/2 공유 지분)를 소유한 이래 부 **환과 함께 '81. 2. 27까지 거주하고, '82. 2.~'84. 2. 기간을 제외한 '18. 9. 6.까지 광주광역시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며,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에 따르면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10. 6. 4)부터 수용재결일 ('22. 5. 4)까지 계속 거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경우 '18. 9. 7.부터 여수시 ○○동 **7-2번지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됨
- 대법원 판례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 가급적 이주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주대책 제도의 취지이고, 시혜적으로 시행되는 이주대책 수립 등의 경우에 그 대상자의 범위나 내용 등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 신청인의 경우 장기 미집행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묶여 그동안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행위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점, 어릴 적 추억이 묻어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는 상실감 등에 대한 정신적 보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사업시행자인 여수시는 토지보상법 등의 취지에 걸맞게 최대한의 재량을 발휘해 줄 것을 의견 표명함

5 처리결과 → 불수용

◆ 소관부서 : 공영개발과

- **지구 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이후 이주택지 공급제외자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이주거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법원 판례 검토, 타기관 사례 조사, 민원조정위원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주택지 공급 기준을 확대하여 대상자를 선정함

- 이주대책 수립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의 폭넓은 재량이 있으나 재량행위의 기준이 형평에 반하는 등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아니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함. ‘84년 전출 **광역시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확인되어 실제 터전을 잃어버린 택지 대상자들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이주 대책 대상자로 선정하기 어려움

○○면 △△마을 주차장 구획 재정비 요청

1 민원개요

- 마을 주차장 주차선 등 재정비 요청

2 사실관계

가. 주차장 현황

- 토지소재 : ○○면 ☆☆리 **13-5
- 지목(면적) : 전(691㎡)
- 주차면수 : 22면
- 토지 소유자 : 여수시(건설과)
- * 이용현황 : 주차장 및 마을 안길

나. 사실관계

- 고충민원 접수 '24. 11. 04.
- 현장확인 '24. 11. 12.

3 판 단

- ○○면 ☆☆리 **13-5번지 소재 마을 주차장은 여수시 소유의 토지로 2005년경 ○○산 등산객 주차장 목적으로 설치하여 등산객과 마을주민들이 주차장 및 마을안길 연결 통로로 활용하고 있으나 주차선이 지워져 차량을 무분별하게 주차함으로써 마을 안길 진입로 입구를 막는 등 주민 불편 발생

4 결론

- 여수시(건설과)에서는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하고 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차선을 유도하는 차선 유도봉과 주차를 금지하는 주차 금지봉을 현장에 맞게 적절하게 설치하고
- 해당 토지 지목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원활한 차량 통행과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 표명함

5 처리결과 → 수용

◆ 소관부서 : 건설과

- 해당 토지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 임의로 주차선 도색을 할 수 없으나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규제봉 설치를 검토 할 예정

온누리 상품권 사용 완화 요청 건의

1 민원개요

- ○○시장 도로 건너편에서 상점을 운영 중인데 전통시장이 아니라서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므로 사용 가능 요청

2 사실관계

- 고충민원 신청인 상점 현황
 - 상호명 : ○○ ○○점
 - 위 치 : 여수시 ○○로 6
 - ※ ○○시장 입구 인접도로(2차선) 건너편(직선거리 약 10m)
- 온누리 상품권 제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을 의미함

3 판 단

가. 관계 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의2(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상점가의 범위)
- 「여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6조(상권활성화 구역범위),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지정 및 변경절차)

나. 판단 내용

-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취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사용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기 위함임
- 「여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6조는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 및 상점가의 경우에는 같은 상권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고 하고 있고
- 같은 조례 제7조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고 하고 있음

4 결론

- 신청인의 상점은 ○○시장과 10m 거리에 불과하여 시장의 일부라 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운영하는 상점과 해당 구역 상인(상인회)의 협조하에 가맹점 등록 및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5 처리결과 → 불수용

◆ 소관부서 : 경제일자리과

-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내의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신청시 우리 시에서 업무처리 절차상 해당 점포의 가맹점 등록 가능지역 포함 여부만 확인하고 있으며 이후 가맹점 승인 절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처리하고 있음
- 신청인의 상점은 인근 전통시장과 20m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해당지역은 상권활성화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온누리 상품권 등록이 불가함.

기후보호환경해설사 복귀 요청

1 민원개요

- '15. 2. ~ '21. 2. 약 8년동안 기후보호해설사 활동을 해오다 '21. 8. ~ '23. 7. 까지 약 2년간 시청 산단환경관리과 환경감시원(기간제) 기후보호해설사 활동을 정지한 후 '24. 12. 15. 기후생태과 정** 팀장과 면담하였으나 복귀가 어렵다고 해서 민원을 요청함

2 사실관계

가. 23년도 찾아가는 시민환경교육 및 환경체험관 운영 계획

- 운영인원 : 15명
- 운영내용 : 찾아가는 시민환경교육 강사 및 환경체험관 설명
- 자격기준 : 기후보호전문(고급과정) 교육을 수료한 자
- 근태관리(기후보호해설사 배치 제척사항)
 - 3개월 연속 체험관해설 활동이 없는 경우
 - 당해연도 누적경고 2회 이상
 - 품위손상 및 유료해설활동 등 부적절한 행위 등

나. 활동이력

기 간	활동이력	발령자
'15. 2 ~ '22. 2(8년)	기후환경보호해설사	여수시
'21. 8 ~ '23. 7(2년)	산단환경 감시원	여수시
'23. 6 ~ '24. 11	기후보호 환경 및 탄소중립 실천교육강사 과정 수료	전남녹색환경센터

다. 사실관계

- 직소민원 접수(신청인→직소민원실) '24. 1. 25.

- 기후보호해설사 복귀 요청에 대한 거절 및 해촉 사유
- 직소민원 처리결과 안내(직소민원실→신청인) ‘24. 1. 29.
- 기후보호해설사 배치 제척사항에 해당
 - ※ 3개월 연속으로 체험관 활동이 없는 경우
- 고충민원 신청서 접수 ‘24. 12. 16.

3 판 단

- ‘14. 2. 21. 환경체험시설 설명(10명)과 ‘14. 5. 29. 찾아가는 기후보호 및 환경 시민교육(5명)을 위하여 기후보호해설사를 모집하는 공고를 실시하여 기후 보호해설사를 모집한 사실이 있고,
- 23년도 찾아가는 시민환경교육 및 환경체험관 운영계획(‘23. 2. 17.)에 따르면 여수시는 시민을 상대로 기후 보호 및 환경 교육과 환경체험관시설 설명을 위해 15명의 기후보호해설사를 운영할 계획이었음
- 근태관리를 위해 음주 및 숙취 상태 활동, 불친절과 무단이탈 등의 경고 규정과 3개월 연속으로 체험관 해설 활동이 없는 경우, 품위손상 및 부적절한 행위 등의 기후보호해설사 배치 제척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기후보호해설사 배치 제척사항 중 ‘3개월 연속으로 체험관 해설활동이 없는 경우’ 는 기존 활동 중인 기후보호해설사에 대한 근태관리 규정으로 보이며, 활동 중인 기후보호해설사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모집 과정을 통해서 해설사를 충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신청인의 경우는 ‘22. 8. ~ ‘23. 7.(1년간) 기간 동안 해설사로 활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해설사 활동을 희망하는 타 시민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아니하면서 해설사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모집 과정을 통해 선발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4 결론

- 여수시는 기후보호해설사 모집 및 충원과 관련하여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기후해설사 모집·충원으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줄 것을 의견표명함

5 처리결과 → 수용

◆ 소관부서 : 기후생태과

- ‘23년도 운영계획 중 기후보호해설사 배치 제척사항(3개월 연속으로 체험관 해설 활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해설사 활동이 종료된 상태임. 추후, 기후보호해설사 재정비 시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공개모집 추진할 계획임.

2 각하

불법배수로 이설문제 및 행정착오로 인한 준공허가 취소 요청

1 민원개요

- ○○동 **0-21(주*) 신축공사시 개인오폐수관을 설치하였는데 행정착오로 인한 잘못된 준공허가이므로 바로잡기 위해 민원제기 - 준공허가시 첨부한 배수로 설계도면과 다르게 설치(○○동 **9-11, **9-13/이**소유)
- 담당설계자, 감리자, 건축주, 시공자, 현장소장은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법으로 이** 땅에 설치했는지 강력한 조사 및 처벌 부탁

2 사실관계

가. 현 황

- 관련토지현황 : 여수시 ○○동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 고
9-11	도로	14	이	**9-6에서 분할 ('05. 3. 9)
9-13	도로	47	이	**9-6에서 분할('11. 6. 17)

- 토지이용 상황
 - ○○동 **9-11(도로), **9-13(도로)는 아스콘 포장된 도로로써 마을 내 도로로 사용하고 있음
 - ○○동 **9-11은 '05. 3., **9-13은 '11. 6. 각각 **9-6번지에서 분할됨과 동시에 전에서 도로로 지목 변경되었음

나. 사실관계

- 재물손괴 관련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22. 1. 19.
- 피고인(주*)에 대하여 벌금 800만원 선고
-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 접수(2022가단55***) ‘22. 5. 13.
※ 현재 1심 소송 진행 중
- 재물손괴 관련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24. 1. 11.
- 피고인(주*)에 대하여 무죄 선고
- 고충민원신청서 접수 ‘24. 7. 1.

3 판 단

- ‘24. 1. 11. 재물손괴 관련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문 3. 다항에 ‘② 여수시로부터 공사허가를 받은 설계 도면에 따르면 배수로가 국가소유인 토지 지하를 지나가므로 여수시와 협의 후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소유의 토지를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라고 적시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있음

4 결 론

- 또한 상기 민원과 동일한 사안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민사)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각하 결정함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피해보상

1 민원개요

- 한국○○○○ 공동주택 신축시 대형트럭의 진출입으로 건물 벽에 금이 가고 (서**, 정**, 안**, 이**)
- 물길 변동으로 인하여 주택(내벽)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었으니 피해보상(서**)

2 사실관계

가. 사업개요

- 위 치 : 여수시 ○○동 *04외 91필지
- 사업주체 : (주)○○ 대표이사 최**
- 시 공 사 : (주)○○○○ 대표 최**
- 건축규모 : 대지 39,739㎡/건축 13,742㎡/연면적 31,344㎡
지하 1층, 지상 5층/ 연립주택 18동 274세대
- 사업기간 : '20. 12. 20. ~ '24. 8. 30.

나. 민원발생 위치 및 피해 내용

주 소	소유자	피해내용	비고
○○ 3길 *3-4	서**	주택 내외벽 및 마당 균열 발생 주택 내벽에 다량의 누수 발생	
〃 *4	정**	주택 내외벽 및 마당 균열 발생	
〃 *1	안**	주택 내외벽 및 마당 균열 발생	
〃 *1-1	이**	주택 내외벽 및 마당 균열 발생	

다. 주요 진행상황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20. 1. 30.
- 착공신고 ‘20. 12. 1.
- 주택가 인접 경사지 이면도로 공사차량 이동에 의한 진동으로
주택피해발생 민원신청(시민소통담당관) ‘23. 7. 21.
- 주택피해발생 민원 관련 처리결과(허가과) ‘23. 7. 31.
 - 시공사 및 시행사와 협의, 환경조정위원회 이용 안내
- 시공사(○○건설) 회생절차개시 신청 ‘24. 4. 29.
- 전남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 결과 ‘23. 7. 8.
 - 이**, 김**, 유**(기각)
- 사업계획 변경승인 ‘24. 7. 23.
 - 사업주체, 시공사, 사업기간 변경 등 ※ 사업개요로 변경
- 한국○○○○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피해보상 민원 접수(옴부즈만실) ‘24. 8. 14.

3 판 단

가. 관계 법령

-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제16조, 제42조

나. 판단 내용

- 환경분쟁조정법은 환경분쟁의 알선·조정·재정 및 중재의 절차 등을 통하여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법으로써 같은법 제42조제3항은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4 결 론

- 따라서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 처리함

주택 내부 방전체 물이 스며들어 곰팡이 발생

1 민원개요

- 2020년부터 지금까지 여름에 비가 오면 집에 물이 스며들어서 방 전체 벽, 바닥이 곰팡이가 발생하고 습기로 인해 생활할 수 없음
- 2020년 우리 집 뒤에 주택 3채를 철거하고 도로를 만든 이후부터 집에 물이 들어오고 있음

2 사실관계

가. 현황

- ○○동 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황
 - 위 치 : ○○동 *40-11번지 일원
 - 사업 량 : 도로개설 L=230m B=8m
 - 사업기간 : 2020. 4. 10.~ 2021. 6. 3.
 - 사업 비 : 2,650백만원(설계 및 공사 1,300, 보상 등 1,350)
- 신청인의 소유 건물 현황
 - 주용도 : 단독주택
 - 지 번 : ○○동 *47
 - 사용승인일 : 1977. 3. 3.
 - 구 조 : 시멘트 블록구조
 - 면 적 : 54.08㎡

나. 사실관계

- 공사 후 주택 피해 민원 제기 및 적정 조치
 - 담장 복구 및 담장 높이 추가 시공 '21. 1. ~ '21. 3.
 - 가옥 내·외벽 보수 및 페인트 도장 작업 '21. 1. ~ '21. 3.
 - 누수로 인한 주택 내부 벽지, 장판 교체
 - 주택 뒤편 담장 일부 파손 '21. 6. 3.

- 현장 확인 및 파손 담장 토사제거, 반출, 담장 쌓기, 도장, 주택 뒤편 맹암거 설치 '21. 6. 7. ~ 6. 15.
- 맹암거 추가 설치 '22. 7.
- 콘크리트 포장 시행(○○동 648-2번지) '22. 10.
- 여수시 직소민원 접수(2회) '23. 6./8.
- 우수관 내부 CCTV 촬영 조사 시행 (파손된 관로 발견) '23. 11. 21.
- 환경분쟁사건신청(중앙환조 23-3-164) '23. 11. 22.
-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 사건
- 우수관로 교체 및 복구 '24. 3. 25.
- 2024년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서면) '24. 4. 20.
- 여수시 고충민원 접수 '24. 8. 27.

3 판 단

- 신청인의 소유건물은 1977년 사용승인되어 47년이 경과 된 단독주택으로 시멘트 블록구조 건물임
- 방에 물이 스며드는 누수관련 민원의 경우 ○○○건설(주)에서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 까지 주택 내·외벽 보수 및 페인트 도장(벽지, 장판 교체 포함), 담장 쌓기 및 맹암거 설치(2회), 뒷집 나대지 콘크리트 포설 등 총 4회에 걸쳐 민원 해소를 위한 작업을 시행한 사실이 있고,
- 여수시에서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우수관 내부 CCTV 촬영조사와 우수관로 교체 등 2회에 걸쳐 민원 해소를 위한 작업을 시행한 사실이 있음

4 결 론

- 이에 여수시와 도로공사 시공사에서 총 6회에 걸쳐 민원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작업을 실시 하였으나 신청인 주택 내부에 물이 스며들어 곰팡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지 못하였고, 민원 발생 원인이 '○○동 4통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때문이라는 점 또한 명확하지 않으므로 민원인의 신청을 각하함

방과 후 학교 학습비 균등 지원 요청

1 민원개요

- 방과 후 학교 학습비를 농어촌지역은 지원이 있는데 시내 학교는 지원이 없으므로 균등 지원요청

2 사실관계

- 방과 후 학교 운영 근거(소관부처 : 교육부)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제2015-74호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2항 2호(수익자 부담경비), 동법 제32조(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동법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3 판단

- 방과 후 학교 운영은 교육부 소관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2항 2호에 의거,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수익자가 경비를 부담하며,
- 농어촌학교는, 도시지역에 비해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와 동 법 제23조의 농어촌학교 학습의 학습권 보장,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등의 근거에 따라 지원하고 있음

4 결론

- 아울러 방과 후 학교 학습비 균등 지원요청 민원은 교육부(여수시 교육청) 소관 이므로 「시민음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 제7조(관할)에 의거 각하함

3 기각

국유재산 매각대금 일부 상환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치 재요청

1 민원개요

- 여수시 ○○면 ○○리 *860-6번지(361평 상당)소재 국유지를 1981년 매입대금 일부(2회차)를 납부한 사실과 기납부한 매입금 반환 및 관련 조치 재요청 (2019년 민원과 동일)

2 사실관계

가. 민원토지

- 대상토지
 - 위 치 : 여수시 ○○면 ○○리 *860-6
 - 면 적 : 1,193.0㎡(지목 : 답)
 - 소 유 자 : 국(재무부)
 - 이동상황
 - 토지분할(○○리 *860번지에서 분할) '49. 2. 10.
소유자 : **茂市(**무시)
 - 소유권이전(**茂市 → 재무부) '79. 3. 24.
 - 환지계획 승인 '95. 6. 14.
○○리 *806-6(1,193㎡) → ○○리 *102-8(3,000.2㎡)
 - 경지정리 시행신고 '97. 11. 24.
 - 경지정리 완료 후 폐쇄 '99. 6. 26.
 - 토지분할로 면적축소(2102-8/1,531.1㎡) '12. 9. 11.
 - 소유권이전(국 → 박**) '12. 10. 8.
- ※ 현재 답으로 이용 중

나. 사실관계

- 영수증(제29호/‘77년 수시분 취득세) ‘77. 6. 30.
 - 납부자 : 이**
 - 수급자 : (○○)면수입금출납원 서*기
 - 납부금액 : 3,317원
- 간이수입계산서 ‘78. 2. 13.
 - 공급자 : 합자회사 ○○기업
 - 공급받는자 : 이**
 - 영수금액 : 4,500원(○○리 *860-6, 답 361평)
- 국유재산 매매계약 체결(이** - 여천군) ‘79. 12. 23.
 - 재산의 표시 : 여수시 ○○면 ○○리 *860-6 답 361평
 - 매 각 금 액 : 1,095,050원 (보증금 : 120,000원)
 - 납 부 기 한 : ‘80. 1. 20.
 - 계약 체결일 : ‘79. 12월
 - 매 도 자 : 여천군
 - 매 수 자 : 이**
- 국유재산매매계약체결(공문 - ‘81. 11. 14. 발송) ‘81. 11. 13.
 - ※ ‘81. 11. 23. 11:00까지 면사무소 참석하여 보증금 납부 및 인감증명 등 제출 요청 또는 매수계약포기서 양식 첨부
- 고충민원신청(이** → 옴부즈만실) - 1차 ‘19. 12. 10.
 - 민원처리결과 - 기각 ‘20. 1. 17.
- 고충민원신청(이** → 옴부즈만실) - 2차 ‘24. 9. 24.
- 민원관련 법무사 통화(진**/조카) ‘24. 9. 30.
 - 민원토지(○○리 *860-6)는 적산토지로서
 - 불하받기 전 장**토지(○○리 *860-6)과 이**토지(미상)를 서로 바꾸기로 함
 - 이**은 장**토지(*860-6)에 대해 토지 상환대금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토지(미상)에 대한 장**의 토지 상환대금 납부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3 판 단

가. 관계 법령

-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 농지개혁법 제11조, 제13조, 제14조
 - ※ 1991. 1. 1. 농지개혁법 폐지 시행

나. 판단 내용

- 민원토지(○○리 *860-6)는 1949. 2. 10. ○○리 *860에서 분할된 적산토지(추정/소유자 : **茂市)로서 1979. 3. 24. 국(재무부)으로 소유권이 이전됨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중 영수증 및 간이세금계산서는 '77, '78년도에 발급된 것으로 당시 (구)여천군에서 국유재산매매 시기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농지개혁법 제14조는 적산토지에 대해 '일체의 등록세, 부동산 취득세 또는 이득세 등을 면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적산토지를 불하받은 증빙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79. 12. 23. 당시 여천군은 이**과 ○○면 ○○리 *860-6(답 361평)에 대해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81. 11. 13. 이**은 여천군으로부터 '81. 11. 23. 11시까지 ○○면사무소에 출석하여 보증금납부 및 인감증명 등을 제출하거나 매수계약포기서 양식이 첨부된 공문을 받은 사실이 있음
- ○○리 *860-6은 1999. 6. 26. 경지정리 완료 후 분할(○○리 *102-8/1,531.1 m²)되어 2012. 10. 18. 박**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현재 답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은 ○○리 *860-6에 대해 상환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상환하였다고 인정할 어떠한 자료도 남아있지 아니함

4 결 론

- 따라서 신청인이 요청한 국유재산 매각 대금 일부 납부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치 재요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함

길을 찾읍시다

1 민원개요

- ○○○ △△리 *644 구거 기점. △△리 본동 가는 불무덕 고갯길 (지목 : 구거) 재복구 요청

2 사실관계

가. 관련토지 이동현황 및 이용실태

- 관련토지이동현황 : ○○면 △△리

지 번	공부상 지목	이용 현황	지 적	소유자	이동내용
△△리 *293	잡종지	양 어 장	443	박*보	○ 1939. 1. 15 소유권이전
	잡종지		443	박*순	○ 1989. 3. 25 소유권이전
	양어장		4,414	황*욱 김*희외2	○ 1990. 12. 3 소유권이전 및 지목변경 *291-3, *293-1, *294, *295, *295-1과 합병 ○ 2009. 12. 22 소유권이전 이*윤→전*남→김*희, 최*익, 박*태(현)
*291-1	전	양 어 장	615	심*진	○ 1945. 4. 30 사정
	양어장			황*업	○ 1993. 7. 21 소유권보전
				전민남	○ 1999. 12. 2 소유권이전
				〃	○ 2005. 3. 11 지목변경 및 *293과 합병되어 말소
△△리 *293-1	전	양 어 장	348	건설부	○ 1989. 10. 24 소유권보존
	양어장			여천군	○ 1990. 1. 23 소유권이전
				전*남	○ 1990. 3. 14 소유권이전 박*안→황*욱→이*윤→전*남(현)
				〃	○ 2005. 3. 11 지목변경 및 *293과 합병되어 말소
*294	답	양 어 장	750	김*성	○ 1978. 4. 8 소유권이전
	양어장			전*남	○ 1999. 7. 2 소유권이전 황*욱→이*윤→전*남(현)
				〃	○ 2005. 3. 15 지목변경 및 *293과 합병되어 말소

*295	전	양 어 장	2,258	박*보	○ 1957. 2. 25 소유권이전
				전*남	○ 1999. 7. 2 소유권이전 박*순→황*욱→이*운→전*남(현)
	1,658		〃	○ 2001. 5. 18 분할되어 본번에 -1부함	
			〃	○ 2005. 3. 11 지목변경 및 *293과 합병 되어 말소	
*295-1	전	양 어 장	600	전*남	○ 1999. 7. 2 소유권이전
	양어장			〃	○ 2005. 3. 11 지목변경 및 *293번과 합병 되어 말소

나. 사실관계

- 고충민원 신청서 접수 ‘24. 10. 15.
- 현장확인 ‘24. 11. 6.

3 판 단

- 신청인은 과거에 존재하였던 길을 찾아 회복해 줄 것을 요청한 민원으로 인정되어 1915년 작성된 지적도면과 2024년 발급한 지적도면을 비교하고,
- 토지대장과 현장을 확인한 결과 △△리 **41, **43, **44번지는 모두 구거로서 도로(농로)로 포장되어 있고 현재까지 지적도면 및 토지대장상 구거로 존재하고 있음
- 또한 △△리 **93번지는 1990. 12. 3 양어장으로 지목 변경됨과 동시에 **91-3, **93-1, **94, **95, **95-1과 합병(4,414㎡)되었고, 폐쇄된 지적 도면을 확인한 결과 이들 토지 사이에는 도로나 구거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4 결 론

- 현재 김** 외 2인이 공유하고 있는 상태로 양어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신청인이 요청한 ‘길을 찾읍시다’ 관련 민원은 도면과 지목 그리고 토지 이용 상황이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기각함

사유지 내 하수관로 철거 요청

1 민원개요

- 여수시 ○○동 **1, **2, **3, *55번지에 하수관로(약 500mm ~ 1,000mm)가 지나감으로 인해 개발 및 타 용도로 사용 시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하수관 이전 또는 매입 요청

2 사실관계

가. 토지 이용현황

- 토지이용실태 : 여수시 ○○동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이용실태	비 고
1	대	207	박	주택부지	
**2	ㄱ	17	ㄱ	나대지	
**3	ㄱ	179	ㄱ	나대지	
*55	답	1,484	ㄱ	묵답	

- 주변토지 이용상황

- ○○동 **2, **3은 2차선 도로에 연접한 나대지이고, ○○동 **1은 주택 부지임
- ○○동 *55는 현재 묵답 상태임
- ○○동 **5-1은 **여고 인근 주유소와 연결되는 구거로 **천과 연결되어 있고, ○○동 *55와 **1 사이를 가로지름

나. 사실관계

- 고충민원 신청서 접수 '24. 11. 19.
- 고충민원 관련 현장 확인 '24. 11. 28.

3 판 단

- 신청인이 하수관로가 사유지 내를 지나간다고 주장하여 지적 도면과 현장을 확인한 결과 ○○동 **5-1은 실제 존재하는 구거로 하수관로(구거)가 사유지를 지나가는 경우가 아니라 ○○동 *55와 **1 사이를 가로지르는 구거로 확인 되었으며
- ○○동 **1은 주택부지, ○○동 **2, **3은 나대지, *55는 묵답으로 확인되었음

4 결 론

- 따라서 ‘사유지 내 하수관로 철거’ 를 요청하는 민원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함

4

종결

증여사실 없는 토지의 반환 요청

1 민원개요

- 여수시 ○○면 △△리 *29-2(도로)는 부친의 땅인데 1974년 여천군으로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
- 상속인은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알지도 못함. 부친이 소유했던 토지를 다시 찾고 싶음.
- ※ 관련 토지 : △△리 *14-2, *15-1, *29-1, *30-1

2 사실관계

가. 민원토지 이동현황 : ○○면 △△리

□ 토지대장 기준

지번	지적(㎡)	소유자	비 고
*29-2 (도)	28.3	여수시	○ 1935. 8. 12 소유권이전(황**) ○ 1974. 9. 18 *29-1에서 분할, 지목 변경(3㎡) - 등기부 증여 ○ 1984. 12. 29 소유권이전(여천군) ○ 2003. 11. 21 소유권이전(여수시) ○ 2023. 12. 7 지적재조사완료

□ 등기부 기준

지번	지적(㎡)	소유자	비 고
*29-2 (도)	28.3	여수시	○ 1974. 9. 18 여천군으로 이전(증여) ※ '84. 12. 31. 접수, 법률 제3562호(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 1998. 4. 1 여수시로 승계 ○ 2024. 1. 24 지적재조사 완료 접수

나. 사실관계

- 토지대장 - 분할(3㎡)·지목변경, 등기부 - 증여 '74. 9. 18.
- 소유권이전(황** → 여천군) '84. 12. 29.
- ※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652호)에 의거 소유권 이전함
- 지적변경(지적재조사 완료)(3㎡ → 28㎡) '24. 1. 24.
- 고층민원 접수(옴부즈만) '24. 7. 30.
- 관련자료 제출요청(옴부즈만 → 여수시) '24. 8. 13.
- 보완서류 제출요청(옴부즈만 → 황**)
- 관련자료 제출요청 회신(여수시 → 옴부즈만) '24. 8. 22.
- 보존기간 경과로 등기촉탁서류 부존재

3 판 단

가. 관계 법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별표 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 부동산등기 규칙 제25조

나. 판단 내용

- 민원토지는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의하면 '74. 9. 18. 분할과 동시에 증여된 사실이 있고, '84. 12. 29.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여천군으로 이전되었으며, '24. 1. 24 지적재 조사사업 완료로 3㎡에서 28㎡로 면적이 증가됨
-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당시 여수시에서 등기촉탁한 서류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기록물 보존기간 경과로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신청인에게도 증여 관련 자료를 추가 요청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음
- '74. 9. 18. 이루어진 증여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근거를 찾지 못함에 따라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종결처리함

□ 관련 토지 이동현황 : ○○면 △△리

토지대장기준

지번	지목	지적(㎡)	현 소유자	비 고
*14-2	도	2,560.9	여수시	○ 1965. 3. 9 이** - 소유권이전(60㎡) ○ 1974. 9. 18 지목변경(*14에서 분할) ○ 1984. 12. 29 여천군으로 소유권이전 ○ 2005. 8. 10 *13-2. *15-2와 합병(103㎡) ○ 2003. 11. 21 여수시로 소유권이전 ○ 2023. 12. 7 지적재조사 완료
*15-1	대	257.1	김** 외 1	○ 1974. 7. 14 상속(황**, 황**) ○ 1974. 9. 18 분할(264㎡) ○ 2023. 6. 2 소유권이전(황**, 김**) ○ 2023. 12. 7 지적재조사 완료
*29-1	대	552.3	황**	○ 1973. 8. 12 소유권이전(황** 외 1) ○ 1974. 9. 18 분할(602㎡) ○ 2023. 12. 7 지적재조사 완료 ○ 2024. 5. 17 소유권이전(황**, 김**)
*29-2	도	28.3	여수시	○ 1935. 8. 12 소유권이전(황**) ※ 1974. 7. 14 상속(황**, 황**) - 추정 ○ 1974. 9. 18 *29-1에서 분할, 지목변경(3㎡) - 등기부 증명 ○ 1984. 12. 29 소유권이전(여천군) ○ 2003. 11. 21 소유권이전(여수시) ○ 2023. 12. 7 지적재조사완료
*30-1	목	301.5	김**	○ 1976. 2. 14 황**로 소유권이전 ○ 1992. 5. 12 송**으로 소유권이전 ○ 1996. 3. 15 김**로 소유권이전 ○ 2023. 12. 7 지적재조사완료

등기부기준

지번	지목	지적(㎡)	현 소유자	비 고
*29-2	도	28.3	여수시	○ 1974. 9. 18 여천군으로 증명 ○ 1998. 4. 1 여수시로 승계 ○ 2024. 1. 24 지적재조사 완료 접수

울춘장도 파크골프장 운영시간 조정 요청

1 민원개요

- 하계 운영시간 : 06:00~18:00(휴게시간 : 10:00~14:00)
동계 운영시간 : 09:00~18:00
- 동계 운영시간 조정 요청

2 사실관계

가. 장도파크골프장 현황

- 골프장 시설
 - 위 치 : 여수시 울춘면 여동리 390(장도근린공원내)
 - 규 모 : 18홀(9홀 2개코스)
 - 면 적 : 21,218㎡
 - 이용인원 : 평균 250명/일
- 이용시간(현재)
 - 하 계 : 3월 ~ 10월 (06:00 ~ 18:00)
 - 동 계 : 11월 ~ 다음년 2월(09:00 ~ 18:00)

나. 사실관계

- 고충민원 접수 '24. 10. 2.
- 현장확인 '24. 10. 8.

3 판 단

가. 관계 법령

- 여수시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

나. 판단 내용

□ 동계 일출시각

월 일	일출시각	일몰시각	비 고
'24. 1. 01	07:36	17:28	
'24. 3. 01	06:58	18:25	
'24. 10. 01	06:23	18:13	
'24. 11. 01	06:49	17:35	

'24년도 동계 일출일몰시각은 상기 표와 같음

- '24. 10. 2. 현재 장도파크골프장 운영시간은 09:00 ~ 18:00로 개장시간이 다소 늦은 상태로 인정되었으나 '24. 10. 7. 여수시(체육지원과)에서 장도파크골프장 동절기 운영시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개장시간을 08:00 ~ 17:00 으로 변경하였으므로 민원인의 요청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다고 인정되어 종결 처리함

시유지(휴경지, 2필지) 경작허가 요청

1 민원개요

- 시유지인 ○○동 **7번지, **8-1번지/2필지에 합 370평 정도 휴경지가 있음
- 현재 잡초가 무성하여 황무지 상태로 있는데 경작을 원하니 농업인 장려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요청

2 사실관계

가. 경작 요청 시유지 현황

- 소재지 : 여수시 ○○동 **7번지(전/765㎡), 378-1(전/480㎡)
- 재산관리관 :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 수도행정과

나. 사실관계

- 고충민원 접수 '24. 10. 23.
- 현장확인 '24. 11. 08.

3 판단

가.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 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14조(사용 허가의 방법, 사용료)
-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사용 허가)

나. 판단 내용

- 경작 요청한 시유지 2필지는 심곡 배수정이 설치된 토지로 관련 부서에 사용신청서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종결 처리함

○○마을 당산 제각 보수 요청

1 민원개요

- 제각 노후화로 비가 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수요청

2 사실관계

가. **마을 제각 현황

- 위 치 : 여수시 ○○동 **번지
- 지 목 : 종교용지
- 토지 면적 : 328㎡
- 토지 소유자 : 기타단체

※ 제각 상태 : 목조건축물로 증축된 지 30년이 지나 노후화로 비가 새는 등 보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나. 사실관계

- ○○동 **마을(제각)은 **동 당산보존회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기 위하여 매년 정월 대보름에 당산에서 제사를 지내는 곳임
 - 2023. 9. ~ 2023. 12.까지 국가유산청에서 여수시에 역사문화자원 조사를 위해 1975년 및 그 이전에 조성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적건조물로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가 아닌 것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자원 조사 및 관리 방안 연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 대상에 당해 제각은 해당되지 않았음
 - 현재 본 제각은 문화유산 또는 비지정문화유산이 아닌 시설물로서 문화유산 수리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적용 대상이 아님

3 판 단

- **마을의 제각은 주민들이 오랜 세월에 거쳐 매년 제사를 지내음으로써 마을주민들의 정신적 지주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여주시 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 제8조(문화유산지정) ①항에 의거 향토문화유산(시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를 원할 경우 신청(향토문화유산지정 신청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으로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심의 결과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안내하였으므로 **마을 제각 보수요청 민원을 종결처리함

드론 지원사업 자격조건 변경(청년)

1 민원개요

- 드론교육 지원사업 신청 조건이 14세 이상 여수시민이나, 교육 시간이 평일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학생은 참석이 불가하므로 변경 요청합니다.

2 사실관계

가. 여수시 드론 전문교육 운영 현황

- 교육과정 : 3개 과정(1종 ~ 3종)
- 교육기간 : 2024. 3월 ~ 7월
- 교육인원 : 36명(1종 16, 2종 16, 3종 4명)
- 지원금액 : 교육비의 70%(최대 140만원 지원)
- 교육업체 : 관내 국토부 지정 드론전문교육기관
- 교육내용
 - 이론 : 기본원리, 안전 유의사항, 기본 조작법 및 용어설명
 - 실습 : 드론 모의비행(시뮬레이션) 및 실기 비행
- 자격요건
 - 여수시 거주자(거주기간 1년 이상)
 - 14세 이상
 -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없을 시 신체검사증명서 발급 가능자)
 - 성실히 교육에 임할 수 있고, 자부담금(교육비 30% 선입금 가능한 자)
 - 우대사항 : 여수시 거주 청년(18-45세) 및 관내 대학(교) 재학(졸업)생, 고등학교 재학생

나. 사실관계

- 고충민원 접수

‘24. 11. 07.

3 판 단

가. 관계 법령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전문 인력의 양성)

나. 판단 내용

- 당초 드론교육 취지는 미취업 청년을 위한 전문자격 취득 지원을 우선으로 추진함
- 여수시(신산업에너지과) 에서는 2025년 드론 전문교육 추진 시 14세 이상 학생 및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 가능하도록 평일 및 주말반 과정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므로 고충민원을 종결 처리함

IV. 부 록

- 1.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 2.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권익 보호·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등(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민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시의 “소속기관등”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및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시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시 및 그 소속기관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조례 제5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5. “사무국”이란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6.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2장 옴부즈만 기능·구성 등

제3조(기능)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옴부즈만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기 관할을 정하여 정한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1. 주민들의 권익 보호·구제와 관련된 사항과 민원(고충민원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에 대한 조사·처리
 2.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옴부즈만에게 위임·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3. 주민들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수행
 4.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외 기구·기관들과의 교류·협력
 5. 기타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② 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구성) ① 옴부즈만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한다.

- ②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옴부즈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옴부즈만이 궐위된 경우에 시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옴부즈만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5조(대표옴부즈만) ① 옴부즈만이 다수인 경우에 대표옴부즈만과 부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한다.

- ②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표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옴부즈만이 다수인 경우에 회의는 재적 옴부즈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옴부즈만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관할) 옴부즈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및 그 소속기관등
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출자기관, 출연기관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제8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②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9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권익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0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8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11조(옴부즈만의 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옴부즈만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옴부즈만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 스스로 제1항 또는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임명 또는 위촉을 위하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촉하며,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1. 옴부즈만(또는 고충민원) 담당국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
2.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3.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전국교수협회의 추천 또는 지역 대학의 총장으로 부터 추천을 받은 교수
4. 시 지역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회 의원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옴부즈만 대상자를 복수 추천한다.

⑤ 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의회 동의) ① 시장은 읍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읍부즈만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의회에 위촉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읍부즈만으로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의안을 확정한다.

제14조(자문기구) ① 읍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비밀유지 의무) 읍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사무국 구성 및 운영 등

제16조(사무국) ① 시장은 읍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대표읍부즈만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③ 읍부즈만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고충민원의 전문적 조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파견 또는 채용된 자에 대하여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사·처우 등과 관련한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읍부즈만 운영과 관련한 각종 문서 등에는 ·여수시 공인 조례·를 준용하여 별도의 공인을 각인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② 시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옴부즈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이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부칙(2016. 12. 30. 조례 제1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8. 10.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제3조(의뢰 또는 요청에 의한 조사)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고충민원, 다수인관련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에게 조사를 위임·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의뢰받은 사안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 및 의회에 조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고충민원의 접수) ①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과 타 기관의 옴부즈만에게 중복으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기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고충민원의 이첩)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 중에서 시 및 그 소속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은 옴부즈만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6조(신청서의 보완) ① 옴부즈만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7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 감사원의 심사청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른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조례 제7조에서 정한 관할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6. 그 밖에 ombudsman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ombudsman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8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ombudsman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고충민원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9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ombudsman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조사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ombudsman은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ombudsman의 기피·회피) ① 이해당사자가 「여수시 시민ombudsman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ombudsman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ombudsman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ombudsman은 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ombudsman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ombudsman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스스로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표ombudsman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ombudsman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또는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은 제1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1. 시 및 그 소속기관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시 및 그 소속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 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시 및 그 소속기관등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옴부즈만 및 사무국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그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합의의 권고) ① 옴부즈만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ombudsman은 합의를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조정회의는 ombudsman이 주재한다.
- ③ ombudsman은 제2항에 따른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관계 소속기관등의 관계부서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합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에게 조정회의 참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ombudsman이 이를 확인한다. 이 경우 신청인과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따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의 진행) ① 대표ombudsman은 필요한 경우 조례 제6조에 따른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하며, 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간사의 사무는 파견 공무원이 수행한다.
- ③ 의안의 제안 설명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처리에 참여한 ombudsman이 한다.
- ④ ombudsman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⑤ 의안의 제안 설명을 한 ombudsman은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⑥ 의안의 제안 설명을 한 ombudsman은 고충민원의 심의를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고 신청인과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서의 경정) ① ombudsman은 제14조제6항에 따른 의결서 작성 이후 명백히 잘못된 계산·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결서의 경정이 있는 때에는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 하여야 한다.

제1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의 권고와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1. 고충민원의 내용
2. 시정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의 처리결과 통보 기한 등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의 권고와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1. 관련 법령·제도·시책 등의 현황 및 문제점
2. 제도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의 처리결과 통보 기한 등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옴부즈만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시정권고, 의견표명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시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ombudsman이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처리결과와 통보 등) ① ombudsman으로부터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ombudsman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은 ombudsman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ombudsman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ombudsman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은 ombudsman의 권고 또는 의견과 다른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해소한 경우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ombudsman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ombudsman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및 고충민원의 처리·각하·이첩·종결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① ombudsman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ombudsman은 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확인과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ombudsman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21조(감사의 의뢰) ombudsman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 감사담당 부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자문기구) ① 옴부즈만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행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선정, 위촉,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옴부즈만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참석을 요구한 경우 해당 자문위원은 자문회의에 참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고충민원 중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사항

2.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⑥ 자문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자문위원이 자문회의에 참석한 경우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시장은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파견을 요청받은 경우 고충민원의 처리에 적합한 공무원 또는 직원을 선발하여 파견한다.

② 시장은 파견 후 복귀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희망부서 전보, 근무평정 등 인사 우대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활동 수당 지원) ① 옴부즈만의 업무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활동 수당은 5급 공무원(15호봉) 봉급의 50퍼센트 상당 수준으로 하며, 근무 조건 및 수당 지급 지급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옴부즈만에게 제1항에 따른 활동 수당 외에 민원현장 확인·조사 등에 따른 여비를 공무원 여비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조례 제18조에 따른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이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
3.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하여 시장 또는 그 소속 기관등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한 사항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기록의 관리) ① 옴부즈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처리 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 준영구
2. 심의·의결 관련문서 : 5년
3. 일반문서 : 3년

제2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옴부즈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7. 4. 7. 규칙 제6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8. 10. 규칙 제7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9675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 3층 시민옴부즈만실
Tel. 061)659-3075~3078
Fax. 061)659-5863